공 개

의안번호	제 210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7. 20. (제 14 차)

의결사항

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2. 7. 20.

1. 의결주문

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,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관계부서 협의

○ 금융감독원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2.4.21.) 심의필

○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2.6.16.) 심의필

○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2.7.14.) 심의필

<별지>

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 : 2022.7.25.부터 2023.3.11.까지(7.5월) 영업 전부정지

- 정지 업무 : 금전대부업 관련 모든 영업행위 금지*

*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전부정지 기간에도 다음 업무는 허용

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금의 수령
②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한연장금액이 대부잔액 이내로서 이자율이 종전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조건의 기한연장
③ 문자메시지 및 전화(내전)를 통한 단순정보(연체사실, 연체금액, 계좌번호, 담당자 소속, 성명 및 연락처) 안내
④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
⑤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채무확인서 발급 등 제증명서 발급
⑥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대출채권의 추심
⑦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등 업무
⑧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업무

2. 조치사유

가.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,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*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,

* 2018. 2. 8. 이후 연 100분의 24, 2021. 7. 7. 이후 연 100분의 20

○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.1.30.~2021.7.23. 기간 중 개인 327명에게 327건, 269억 43백만원을 대부하면서 2019.2.27.~2021.8.17. 기간 중 약정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(1년 기준, 최소 0.22%p~최대 706.0%p)하여 총 165,916,926원(최소 7,136원~최대 5,189,916원)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및 제2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제2항, 제3항 및 舊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제2항, 제3항

나.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.3.13.~2021.6.28.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○○○○○○○○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58명에게 대부 58건, 101억 39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 제2항

< 붙임 1 >

관계 법규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, 체당금(替當金)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. 다만,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⑥ (생략)

제9조의4(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· 추심 금지 등) ① (생략)

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(이하 "미등록대부중개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① 시 ·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 ·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· 경고 · 문책의 요구
2.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
3. 직원의 면직 요구

⑦ ~ ⑧ (생략)

<별표1>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(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)

1.~11. (생략)

1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

13.~16. (생략)

17.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

18.~25. (생략)

□ *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① 삭제

② 법 제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.

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한다.

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담보권 설정비용
2. 신용조회비용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⑤ (생략)

제7조의4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)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<별표2>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7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.

나. (생략)

다.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당 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
더.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어.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
□ **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**(2021.7.7. 대통령령 제3161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)

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① 삭제

② 법 제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.

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.

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담보권 설정비용
2. 신용조회비용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⑤ (생략)

□ **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**

제17조(기관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영업의 인가 ·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 · 업무의 전부 정지
   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·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 ·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
   나.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   다. 영업 ·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 · 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·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
   라.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2. ~ 8. (생략)
9. 기관주의

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· 부당행위의 동기, 목적, 방법, 수단,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 ·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

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,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(다만,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 이하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1조에서 같다.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가계금융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3	02-3145-8835